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2
----------	-----

2021. 10.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3일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가. 제안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의 다양화라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안 제3조)
(현행) 질병관리본부
(변경) 질병관리청
-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안 제3조)
(현행) 수입증지
(변경)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삭제(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의 다양화라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제1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이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개정(시행 2020. 9. 12.)된 바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수입증지 납부로 제한하던 것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다양화한 것임.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8) 및 「전자정부법」 제14조9)를 준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 전산민원접수대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지방세,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을 현금 대응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표로 그동안 위·변조가 용이하며 재사용 문제 등 공무원의 부패 발생뿐만 아니라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 수수료 등으로 행정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구매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음.
- 이에 행정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타당함.

○ 안 제3조제5항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수입증지 요금계기는 종이 수입증지 대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 제4조의2¹⁰⁾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동일하게 수수료 납부에 사용이 가능한 바, 별도의 조항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의 다양화라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0)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
 제4조의2(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①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2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의 다양화라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안 제3조)
(현행) 질병관리본부
(변경) 질병관리청
-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안 제3조)
(현행) 수입증지
(변경)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삭제(안 제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를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규칙」, 「<u>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u>」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u>충청북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u> 재발급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p> <p>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u>수입증지로</u>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 ----- ----- 「<u>질병관리청</u> ----- ----- ----- ----- -----</p> <p>② ----- ----- <u>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u> ----- -----</p> <p>③ ----- ----- ----- ----- <u>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u> ----- -----</p> <p>④ (현행과 같음)</p>

⑤ 제2항과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에 따른다.

⑤ <삭 제>

관련법령 발취

□ 정부조직법('20. 8. 11. 개정, 20. 12. 10. 시행)

제38조(보건복지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7. 7. 26. 개정, 시행)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